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

## 지역아동센터 재무감사 결과

---



감사위원회

# I 감사개요

- 감사종류: 재무감사
- 감사대상: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 관련부서: 아동보육과
- 감사기간: 2022. 7. 4. ~ 7. 13.(8일간)
- 감사범위: 2019. 1. 1. ~ 2022. 4. 30.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인원: 회계감사팀장 외 2인
- 감사중점: 보조금 등 예산 회계 및 업무 처리 전반
- 실시근거
  -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제3조(감사의 종류 등)

# II 감사결과

## □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건, 원)

합 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인원)		주의 (인원)
건수	금액	인원			통보	고발 (인원)	
14	164,995	-	-	-	11(164,995)		2
/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조치
			-	1	-	-	-

## Ⅲ 처분요구사항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지 적 사 항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비고
			조치	금 액		
계	14건	계 14 시정 11 주의 2 권고 1	계 회수 추급 추징 반환 기타	164,995 76,095   88,900	계 경징계 - 훈 계 - 주 의 - 기관징고 -	
1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시정 (6건)	회수	76,095		
2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미신청으로 예산 절감 소홀	권고	-	-		
3	비지정후원금 지출 부적정	시정	기타 (여입)	88,900		
4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수납 규정 미준수	주의 시정				
5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소홀	시정 (2건)				
6	급식지원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시정	-	-		
7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주의	-	-		

### 2. 현지처분사항 일람표

(단위: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금액
계	해당없음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부 서 명】 아동보육과

【관계기관】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회 수(76,095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 현황 【표1】

(단위: 원)

시설명 (지역아동센터)	적립포인트	사용포인트	소멸포인트	잔여포인트	비고
계	283,007	118,451	88,461	76,095	
○○	32,072	30,346	1,426	300	
●●●	7,840	5,795	1,483	562	
◇◇◇◇◇◇◇◇	108,033		37,293	70,740	
◆◆◆	109,288	69,318	38,725	1,245	
□□□□	11,395	0	8,559	2,836	
■■■■	14,379	12,992	975	412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인센티브의 처리)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의하면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 지역아동센터 외 5개소에서는 【표1】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 현황과 같이 보조금 및 후원금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카드 적립포인트를 시설 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아 총 283,007포인트 중 88,461포인트의 소멸분이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아동보육과장은

- 지역아동센터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고, 76,095원의 잔여포인트를 세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미신청으로 예산 절감 소홀
- 【부 서 명】 아동보육과
- 【관계기관】 △△△△△△△△ ▲▲▲▲▲▲▲▲ 지역아동센터
- 【행 정 상】 권 고
- 【재 정 상】 없 음
- 【지적내용】

가. 현 황

○ 지역아동센터 자동차세 연납 미신청 현황 【표1】

(단위: 원)

시설명 (지역아동센터)	차량정보	납부년도	납부금액	연납신청 여부	자금원천
계			247,000		
△△△△△△△△ ▲▲▲▲▲▲▲▲	스타렉스 **라****	2019	61,750	부	보조금
		2020	61,750	부	"
		2021	61,750	부	"
		2022	61,750	부	"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미신청 현황 【표2】

(단위: 원)

시설명 (지역아동센터)	차량정보	납부년도	납부금액 *3월 9월 합산금액	연납신청 여부	자금원천
계			345,710		
△△△△△△△△ ▲▲▲▲▲▲▲▲	스타렉스 **라****	2019	96,040	부	보조금
		2020	98,350	부	"
		2021	100,540	부	"
		2022	50,780	부	"

##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며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2분기(6월, 12월)로 나누어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 같은 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그러나 △△△△△△△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1】, 【표2】와 같이 센터 차량의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보조금으로 납부하면서 선(연)납 신청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아동보육과장은

-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조금 및 후원금을 통하여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관련 감면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비지정후원금 지출 부적정

【부 서 명】 아동보육과

【관계기관】 ●●● 지역아동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기 타(88,900원)

【지적내용】

○ 비지정후원금 지출 부적정 현황 【표1】

(단위: 원)

시설명 (지역아동센터)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처	금액	비고
소계				88,900	
●●●	2021.9.17	신규교사 및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과의 회식	☆☆	37,900	
	2021.12.3.	종사자들 점심 회식	★★★손칼국수	51,000	

### 나. 위법·부당사항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의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르면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며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을 말하며, 지정용도를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 그러나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표1】 비지정후원금 지출 부적정 현황과 같이 비지정후원금을 종사자의 회식으로 지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아동보육과장은

-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88,900원을 후원금 통장에 여입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수납 규정 미준수

【부 서 명】 아동보육과

【관계기관】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행 정 상】 시 정,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또한 운영비는 보조금별 통장, 후원금 통장, 이용료 통장, 퇴직금 적립 통장 등 계정별 통장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반아동에 한해 지역여건 및 시설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납 가능하다. 이때 이용료는 월 5만원(2022년 기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로 사용가능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및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 월별 수납액을 운영비 신청시에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9. 12. 11. 이용료 수납 보고 절차 미준수로 개선명령을 받고 2020년 1월과 2월에 수납상황을 보

고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월별 수납액을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았다.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9~2021까지 이용자 보호자로부터 5만원 한도 내에서 기타잡수입 통장으로 수입을 관리하였으나 이용료 수납에 대해 세입처리 하지 않았고, 시설장이 매년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 또한 아동보육과에서는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료 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처분요구】

### 아동보육과장은

- ◇◇◇◇◇◇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료 월별 수납액을 보고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료 수납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소홀

【부 서 명】 아동보육과

【관계기관】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현 황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법령과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20. 6. 12.일자로 개정된 운영규정에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이 아닌 반기별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운영세칙을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제정한 사실이 있다.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을 2019. 4. 1. 시장이 위촉한 후 2022. 3. 31. 3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연임 승인을 받지 않았고,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도 반기별로 1회 운영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에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표와 시설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정기회의를 반기별 1회 개최하도록 하는 등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운영세칙을 제정하였다.
- 또한 아동보육과에서는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처분요구】**

**아동보육과장은**

-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세칙을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기가 끝난 □□□□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즉시 임명·위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급식지원 근로자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부 서 명】 아동보육과

【관계기관】 ■■■■ 지역아동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현 황

○ 급식사업 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 현황【표1】

시설명 (지역아동센터)	사업명	고용기간	고용인원	고용·산재 보험가입여부	계약서 작성여부
■■■■	급식사업	2019. 1. 1. ~ 2020. 6. 30.	1	여	여
		2020. 7. 1. ~ 2022. 7.(현재)	2	부	

### 나. 위법·부당사항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고용보험법」 제8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당연히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제1항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표1】 급식사업 근로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 현황과 같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아동보육과장은

-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 및 산재보험에 미가입 된 ■■■■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부 서 명】 아동보육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가. 현 황

- 아동보육과에서는 【붙임1】 과 같이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 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 그러나 아동보육과에서는 【붙임1】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 및 정산서 지연 제출 현황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조사업자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등을 제출받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아동보육과장은

-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방보조사업 완료 등 실적보고서 제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정산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 및 정산서 지연 제출 현황 【붙임1】

연번	사업 년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정산서 제출일	비고
계					116건	
1	2019	공기청정기	△△△△△△△ ▲▲▲▲▲▲▲ 지역아동센터 외 4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2.	2019	교재교구비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3	2019	급식인력	구세군아산 지역아동센터 외 6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4.	2019	기본운영비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5.	2019	냉난방비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6.	2019	물품구입비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7.	2019	아동프로그램비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8	2019	안전점검비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9	2019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10	2019	운영비(추가)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11	2019	정서함양비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12	2019	종사자 처우개선비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13	2019	토요급식비	○○ 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14	2019	토요운영 운영비(국비)	○○ 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15	2019	토요운영 운영비(도비)	○○ 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16	2019	특수목적 운영비	◇◇◇◇◇◇◇ 지역아동센터 외 1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17	2019	평일 급식비	△△△△△△△ ▲▲▲▲▲▲▲ 지역아동센터 외 7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18	2019	환경개선비	△△△△△△△ ▲▲▲▲▲▲▲ 지역아동센터 외 4개소	2019.1.1. - 2019.12.31	(상반기)2019.9.25. (하반기)2020.5.11.	

※ 아동보육과 제출자료 재구성